

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5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이유

- o '92. 2.29 건설부로부터 안산시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이 승인됨에따라 안산시 고잔동 일원(이동, 사동, 고잔동, 초지동) 약 238만평의 생산녹지 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지원과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전담사업소 설치가 필요함.

2. 주요 골자

- o 사업소 명칭 :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
- o 기구 및 정원 : 2과 34명 (관리과, 사업과)
 - 소장 : 지방4급(행정+시설), 과장 : 지방5급(행정1, 건축1)
- ※ 공영개발사업소(14명)와 도시과 보상계(3명)의 기구 인력을 통·폐합함으로서 실제 17명이 증원됨.
- o 정원 시행일 : '92. 5. 15일 (승인 : '92. 5. 4)
- o 사업소존치 시한 : '97. 12. 31까지 (사업 종료시까지)
- o 주요 관장 업무
 - 1.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 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
 - 2. 주택 건설 사업
 - 3. 택지 개발 사업
 - 4. 기타 신도시 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05조 (사업소)

-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○ 경기 지방01210-1272('92.5.4)호로 안산시 도시개발 지원 사업소 설치 승인 ('92. 3.17 시→도 승인신청)

나. 예산조치 - '92 본예산 확보

○ 토지보상 및 관리비 예산 편성 : 213, 993, 147천원

다. 관련 사업 계획

○ 기 간 : '92~'96년

○ 면 적 : 7.88km² (생산녹지 지역)

○ 수용인구 : 85천명 (주택 23,000호)

○ 사 업 비 : 7,500억원

○ 개발사업 : 공영개발

└ 수 공 : 도시건설사업 및 부지분양

└ 시 :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

○ 사업실시 계획 승인 : '92. 2. 29 (건설부)

라. 조례(안) : 별첨

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(안)

제1조 (설치) 안산시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 지원 및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위치) 사업소는 안산시 고잔동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 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
2. 주택 건설 사업
3. 택지 개발 사업
4. 기타 신도시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

제4조 (소장)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

(2) (폐지조례)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(조례 제434호, '92. 1. 7)는 이를 폐지한다.